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

제정 2012. 5. 18
개정 2013. 3. 01
개정 2013.11.01
개정 2014.01.24
개정 2014.04.11
개정 2014.12.08
개정 2015.02.11
개정 2015.05.06
개정 2015.07.29
개정 2015.08.28
개정 2017.03.02
개정 2017.05.18
개정 2017.06.29
개정 2017.08.24
개정 2017.09.21
개정 2018.04.12
개정 2018.06.21
개정 2018.08.30
개정 2018.10.18
개정 2019.01.10
개정 2019.03.23
개정 2019.04.05
개정 2019.04.11
개정 2019.04.18
개정 2019.07.04
개정 2019.08.09
개정 2019.08.22
개정 2019.09.26
개정 2019.10.17
개정 2019.12.10
개정 2020.02.20
개정 2020.05.21

개정 2020.07.08

개정 2021.03.08

개정 2021.03.17

개정 2021.03.29

개정 2021.04.16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 1 조 (약관의 목적)

① 이 약관은 고객과 키움증권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간의 투자일임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재산 운용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계좌"라 함은 투자일임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3."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 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2 호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 3 조 (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 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일임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투자일임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 5 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투자 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고객이 제 6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이 제 5 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 조 (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는 위탁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 의 100 분의 50 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금지행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제 6 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랩 유형별로 [별지 1]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탁가능한 투자일임재산은 현금 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20 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고객이 제 4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 7 조 (투자일임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서면, 유선 또는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 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④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 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⑤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고객자산의 인출 등)
① 고객은 랩 유형별로 [별지 1]에서 정한 최소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②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 후 즉시 인출할 수 있으나, 현금 이외의 투자일임재산을 처분하여 출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일임재산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④ 투자일임재산의 시장처분 불가 또는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정지, 휴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 요청한 출금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제 9 조 (손익의 귀속)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과 관련하여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0 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일임수수료 등을 [별지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일임수수료 : 일임계약기간동안 연간 기준으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징수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취 또는 후취로 징수된다.
   가. 선취징수 : 자산배분 시 자산배분액 혹은 기말평가금액의 정해진 비율을 정기적으로 선취하며, 중도해지 경우에는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잔여수수료를 고객에게 환급한다.
   나. 후취징수 : 일별 평가금액에 대해 정해진 비율대로 일할 계산하여 기말에 계산된 누적금액을 징수하며, 중도출금시 해당시점까지 누적된 금액을 평가금액 대비 출금비율만큼 징수한다.
2.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한 수익률 또는 기준지표 수익률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고객과 개별 합의에 의하여 징수방법과 시기를 정한다.
3. 중도해지수수료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 또는 출금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로, 투자일임서비스 유형별 중도해지수수료는 [별지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 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 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 3 항의 세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 중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등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부과되는 위탁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동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며, 고객은 동 기한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⑥ 제 5 항의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 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충당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상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자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받는 경우 회사는 [별지 1]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⑧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해지 시까지의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하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 일임자산이 운용된 경우
3.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4. 회사와 고객이 합의해지하는 경우
5. 기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⑨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2. 공개매수의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련법상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우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고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3 조 (기재내용 변경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4 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2. 회사 이외의 제 3 자(제 4 조에 의하여 회사의 투자일임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3.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이나 지연으로 인한 손실
4. 제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15 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 된 경우, 체납처분 이 있는 경우,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약관 등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고객이 회사의 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 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지시로 인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객자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 조 (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고난도 상품을 담는 랩서비스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2〉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7 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5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0 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5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3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1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4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2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2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5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7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8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3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5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9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10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5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7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9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11 월 0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1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4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4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5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7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8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8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9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10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12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2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5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 년 7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3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4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랩 유형별 수수료 징수기준

1. 유형별 수수료 등

주식운용형

▣ 최소가입금액(유형별 차등) 및 일임수수료(후취)

구분	상품명	최소가입금액	연수수료율(후취)		적립식
			온라인전용	일반형	
자문형	키움자산 중소형성장형	1,000 만원	1.2%	1.5%	–
	V&S 다이나믹 중소형가치형	2,000 만원	1.2%	1.5%	–
	블랙넘버스 SPAC랩 (기본 보수형)	5,000 만원	5억원 미만 : 1.5%		–
			5억원 이상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5% 이내)		–
	D&H 액티브 가치투자 랩	2,000 만원	5억원 미만 : 1.8%		–
			5억원 이상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8% 이내)		–
ETF 운용형 (국내)	하이브리드 ETF 랩	500 만원	0.7%	0.9%	–
	차이나 포커스 ETF 랩	500 만원	0.7%	0.9%	10 만원 이상
ETF 운용형 (국내 및 해외)	글로벌 자산배분 ETF 랩	500 만원	1.2%	1.5%	–
로보어드바이저 운용형	글로벌 자산배분형 (원화투자형)	500 만원	0.8%	1.0%	50 만원 이상
	글로벌 자산배분형 (달러투자형)	1,000 만원	1.0%	1.2%	–
	Momentum형	1,000 만원	0.8%	1.0%	–
주식형 (국내)	키워드림 맞춤형 주식랩	5,000 만원	별도협의(연 2.5%이하)		–

▣ 매매수수료	없음
▣ 선취수수료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성과수수료	없음
▣ 수수료징수일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상품명 : 키움 블랙넘버스 SPAC랩 (성과 보수형)

▣ 최소가입금액	5,000 만원
▣ 일임수수료(후취)	연 0.7%
▣ 매매수수료	없음
▣ 선취수수료	5 억원 이하 : 1.6%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6% 이내)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성과수수료	개별 고객과 별도 합의
▣ 수수료징수일	선취 수수료 : 운용 개시일 후취 수수료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성과 수수료 : 계약 해지일, 중도해지일, 일부출금일

상품명 : 위너스 글로벌 채권 ETF랩 (성과 보수형)

▣ 최소가입금액	500 만원
▣ 일임수수료(후취)	연 0.8%
▣ 매매수수료	없음
▣ 선취수수료	5 억원 이하 : 1.2%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2.0% 이내)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성과수수료	개별 고객과 별도 합의
▣ 수수료징수일	선취 수수료 : 운용 개시일 후취 수수료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성과 수수료 : 계약 해지일, 중도해지일, 일부출금일

상품명 : 블랙넘버스 REITs/SPAC랩 (성과 보수형)

▣ 최소가입금액	5,000 만원
▣ 일임수수료(후취)	연 0.7%
▣ 매매수수료	없음
▣ 선취수수료	5 억원 이하 : 1.6%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6% 이내)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성과수수료	개별 고객과 별도 합의
▣ 수수료징수일	선취 수수료 : 운용 개시일 후취 수수료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성과 수수료 : 계약 해지일, 중도해지일, 일부출금일

상품명 : D&H 액티브 가치투자 랩(성과 보수형)

▣ 최소가입금액	2,000 만원
▣ 일임수수료(후취)	5 억원 이하 : 1 년차 0.6%, 1 년이후 1.3%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5% 이내)
▣ 매매수수료	없음
▣ 선취수수료	5 억원 이하 : 0.9%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0.9% 이내)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성과수수료	개별 고객과 별도 합의
▣ 수수료징수일	선취 수수료 : 운용 개시일 후취 수수료 :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성과 수수료 : 계약 해지일, 중도해지일, 일부출금일

상품명 : K-뉴딜 주식형 랩

▣ 최소가입금액	500 만원
▣ 일임수수료(후취)	5 억원 이하 : 1.2%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2% 이내)
▣ 매매수수료	없음
▣ 선취수수료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성과수수료	없음
▣ 수수료징수일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상품명 : 글로벌 월배당 인컴형 랩 (두 번째 월급 랩)

▣ 최소가입금액	500 만원
▣ 일임수수료(후취)	5 억원 이하 : 1.2% 5 억원 초과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2% 이내)
▣ 매매수수료	없음
▣ 선취수수료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성과수수료	없음
▣ 수수료징수일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채권운용형

▣ 최소가입금액 및 일임수수료(후취)

구분	상품명	일임수수료	최소가입금액
채권운용형랩	키워드림 채권형랩	연 0.01% 이상~2% 이하	1 천만원이상
	키워드림 전문투자형 자산배분랩	연 0.01% 이상~2% 이하	1 천만원이상

▣ 매매수수료	없음 (단, 펀드에서 발생하는 판매보수는 분기말 누적분 환급)
▣ 선취수수료	고객과 별도 협의 (연 0.01%초과 ~ 2% 이하)
▣ 중도해지수수료	고객과 별도 협의
▣ 성과수수료	고객과 별도 협의
▣ 수수료징수일	- 선취수수료 : 가입시 또는 추가 입금 시 - 일임수수료(후취) : 계약기간 이전 출금 시 또는 계약 해지일 - 중도해지수수료: 전액 출금 시 또는 계약 해지일

펀드운용형

▣ 최소가입금액(유형별 차등) 및 일임수수료(후취)

구분	상품명	연수수료율(후취)		임의식	적립식
		온라인전용	일반형		
펀드랩 (자문형)	키워드림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랩	0.8%	1.0%	100 만원이상	10만원이상
	키워드림 펀드랩 - 배당형	0.8%	1.0%	100 만원이상	10만원이상
	키워드림 펀드랩 - 성장형	0.8%	1.0%	100 만원이상	10만원이상
	키워드림 펀드랩 - 수익추구형	1.3%	1.6%	100 만원이상	10만원이상
	불리오 더매운맛 글로벌 ETF랩 (두물머리투자자문)	1.2%	1.5%	500 만원이상 5 억원 미만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1.5% 이내)		5 억원 이상	-
	INMOST 글로벌 배당형 랩	2.0%	2.0%	1,000 만원이상	-
	위너스 글로벌 채권ETF 랩	1.0%	1.2%	500 만원이상	-
	불리오 올웨더 ETF 랩	0.5%	0.5%	500 만원이상 5 억원 미만	-
		고객과 별도 협의 (연 0.5% 이내)		5 억원 이상	-
GBI 형	키우GO 자산배분형 랩 (국내ETF, 원화)	0.5%		100만원	1만원
	키우GO 자산배분형 랩 (해외ETF, 달러)	0.8%		500만원	1만원

	키우GO 자산배분형 랩 (펀드, 원화)	0.5%		1만원	1천원
	키우GO 멀티전략형 랩 (혼합자산, 달러)	0.8%		500만원	1만원
펀드랩 (맞춤형)	키워드림 펀드랩 - 맞춤형 A	-	2.0%	10 만원이상	-
펀드랩 (맞춤형) 펀드랩 (본사운용형)	키워드림 펀드랩 - 맞춤형 B	-	1.5%	10 만원이상	-
	키워드림 펀드랩 - 맞춤형 C	-	1.0%	10 만원이상	-
	키워드림 법인용 펀드랩	별도 협의	10억원 이상	-	

▣ 매매수수료	없음 (단, 펀드에서 발생하는 판매보수는 분기말 누적분 환급)
▣ 선취수수료	없음 (단, 선취수수료가 있는 펀드가 편입될 경우 매수 즉시 환급)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단, 펀드의 중도해지수수료가 있는 경우 발생 가능)
▣ 성과수수료	없음
▣ 수수료징수일	자문형, 맞춤형: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본사운용형 : 계약기간 이전 출금 시 또는 계약 해지일

ELS 운용형

▣ 최소가입금액	500 만원 이상
▣ 일임수수료(후취)	연 1.0%
▣ 매매수수료	없음
▣ 선취수수료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성과수수료	없음
▣ 수수료징수일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ELB 운용형

▣ 최소가입금액	500 만원 이상
▣ 일임수수료(후취)	연 0.5%
▣ 매매수수료	없음
▣ 선취수수료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성과수수료	없음
▣ 수수료징수일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RP(환매조건부채권)운용형

▣ 최소가입금액(유형별 차등) 및 일임수수료(후취)

구분	상품명	최소가입금액	연수수료율(후취)		적립식
			온라인전용	일반형	
약정형(개인 및 법인)	키워드림 RP랩 -7일물	10,000 원	0.07%	0.09%	-
약정형(법인)	키워드림 RP랩(약정형)	1 억원	고객과 별도 협의 (연 0.5% 이내)		-
수시형(법인)	키워드림 RP랩	1억원	고객과 별도 협의		-

▣ 매매수수료	없음
▣ 선취수수료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성과수수료	없음
▣ 수수료징수일	계약기간 이전 출금 시 또는 계약 해지일

ILS(보험연계증권)운용형

▣ 최소가입금액	1 만원
▣ 일임수수료(후취)	0.01%
▣ 매매수수료	없음
▣ 선취수수료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성과수수료	없음
▣ 수수료징수일	매 분기 첫 영업일 (1, 4, 7, 10 월 첫 영업일) 또는 계약 해지일

※ 선취수수료는 가입 시 또는 추가입금 시 납입금액 기준으로 징수

※ 일임수수료(후취)는 분기 예탁자산 평잔 기준으로 후취,
온라인전용 수수료는 영상통화를 통한 Wrap 가입 시 적용되는 수수료.
일반형 수수료는 대면상담을 통한 Wrap 가입 시 적용되는 수수료

※ 랩 편입상품에 중도 환매 (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경우 랩 중도 해지 시 발생 가능

※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회사가 받은 선취수수료를 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환급

※ 최소가입금액은 신규가입 시점 기준으로 적용된다.

2. **연체이자율** : 없음 (연체이자 미징수)

[별지 2]

1. 제16조제2항의 “[별지2]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1) 연체이자율 : 연 9.7% (당사 *신용연체율 적용)

*당사 신용연체율은 실제 신용공여 기간과 관계없이 연체 발생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 기간별 신용공여 이자율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하여 결정 됩니다.

2) 연체이자 = 연체금 X 연체이자율 X 경과일수/365 (원미만 절사, 윤년의 경우 계산기간 366일 적용)